

2026년 제1차 이사회기록

일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3층 회의실



사회복지법인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이사회
회 의 록

-
- 회의소집통지일: 2026년 02월 12일 (목)
 - 회 의 일 시 : 2026년 02월 20일 (금) 오전 11시
 - 회 의 장 소 :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내 회의실
 - 참 석 이 사 : 김희자, 이선희, 서정선, 박순옥, 신창수, 권현, 김선희, 김진숙
 - 결 석 이 사 :
 - 참 석 감 사 : 이향수, 신춘희
-

부의안건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회계감사 보고.

- 제1호 의안 2025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안)
- 제2호 의안 2025년도 산하시설 사업보고(안)
- 제3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제4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침(인사관리) 개정 보고(안)
- 제5호 의안 법인사무국 수녀회 인사이동에 따른 종사자 임면의 건

회의진행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성원 보고를 바랍니다.

보고자(사무국장) : 재적 이사 8명 중 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성원이 되므로 개최를 선언합니다. 회순을 채택하겠습니다.

김선희 이사 :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권 현 이사 : 재청합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이의는 없습니까?

이사 일동 : 이의 없습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의 회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차 회의록을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자(사무국장) : 전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의장(김희자 대표이사) : 전차 회의록에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이사 : 회의록은 잘 작성되었습니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선희 이사 : 재청합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이의 없습니까?

이사 일동 : 이의 없습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회계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자(사무국장) : 2026년 2월 5일에 이향수 감사와 신춘희 감사는 법인 및 산하시설의 행정과 회계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배포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감사 보고에 대한 질문 있는지 묻는다.

이사 일동 : 없습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2025년도 회계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2025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보고(안)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1호 의안 2025년도 법인 및 산하 시설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법인과 시설 대표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법인]은 사무국장, [씨튼직업재활센터]는 김명숙 원장, [씨튼주간보호센터]는 김영애 원장이 설명하다.

결산내역
씨튼수녀회 사회복지원

2025년 총괄 (단위: 원)

세입총괄				세출총괄				차감액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계	838,025,000	844,812,293	-6,787,293	계	838,025,000	844,812,293	-6,787,293	0
01 재산수입	11,000,000	11,000,000	0	01 사무비	95,300,000	45,736,021	49,563,979	
02 후원금수입	91,000,000	99,553,770	-8,553,770	02 재산조성비	15,000,000	0	15,000,000	
03 이월금수입	390,524,283	390,524,283	0	03 전출금	512,184,000	422,400,000	89,784,000	
04 잡수입	345,500,717	343,734,240	1,766,477	04 예비비	215,541,000	376,676,272	-161,135,272	

결산내역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2025년 총괄 (단위: 원)

세입총괄				세출총괄				차감액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계	3,301,700,000	3,158,184,552	143,515,448	계	3,301,700,000	3,158,184,552	143,515,448	0
01 이용인부담금수입	44,400,000	49,160,000	-4,760,000	01 사무비	2,387,840,700	2,342,841,711	44,998,989	
02 사업수입	1,494,852,700	1,435,878,047	58,974,653	02 재산조성비	175,500,000	164,362,673	11,137,327	
03 보조금수입	1,253,159,000	1,253,070,463	88,537	03 사업비	737,224,797	640,566,055	96,658,742	
06 전입금	503,184,000	413,400,000	89,784,000	06 상환금	0	0	0	
07 이월금	4,093,719	4,093,719	0	07 잡지출	1,000,000	300,000	700,000	
08 잡수입	2,010,581	2,582,323	-571,742	차년도이월금	134,503	10,114,113	-9,979,610	

결산내역

(씨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데레사의 집)

2025년 총괄

(단위:원)

세입총괄				세출총괄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증감
계	586,000,000	583,543,932	2,456,068	계	586,000,000	583,543,932	2,456,068
01 이용인 부담금 수입	68,400,000	66,750,000	1,650,000	01 사무비	522,242,470	515,610,700	6,631,770
03 보조금수입	498,681,000	498,681,000	0	02 재산조성비	5,800,000	4,894,420	905,580
04 후원금수입	1,460,000	1,460,000	0	03 사업비	57,900,000	47,301,450	10,598,550
06 전입금	9,000,000	9,000,000	0	07 잡지출	0	0	0
07 이월금	7,636,131	7,636,131	0	반환금	47,227	47,227	0
08 잡수입	822,869	16,801	806,068	차년도이월금	10,303	15,690,135	-15,679,832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창수 이사 : 2025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도 있었으니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김선희 이사 : 재청합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질문 사항을 묻다.

서경선 이사 : 보고를 듣고 이의 없음을 표하다.

권 현 이사 : 서경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선희 이사 : 동의안에 재청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대한 의견을 묻다.

전 체 이 사 : 전원 찬성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 2025년도 결산은 [법인]세입/세출원844,812,293원
[직업재활센터]세입·세출3,158,184,552원[주간보호센터]세입·세출583,543,932원
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 의안 2025년도 산하시설 사업 보고(안) (자료공유)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2호 의안 2025년도 산하시설 사업보고(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다.

김영애 원장 : 씨튼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5년도 사업보고를 하다.

김명숙 원장 :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 2025년도 사업보고를 하다.

김선희 이사 : 산하시설 사업 보고를 받고 수고에 격려를 하셨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다른 질문 있는지 묻는다.

서경선 이사 : 이의 없음을 표하다.

신창수 이사 : 서경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김선희 이사 : 신창수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김선희, 신창수 이사의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전 체 이사 : 전원 찬성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2호 의안 2025년도 산하시설 사업보고안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3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장에게 설명을 들겠습니다.

김명숙 원장 :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부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5.2.23. 시행)

경조사 휴가일의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대비표에 대해 계속 보고를 하다.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p>복무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p> <p>제36조(경조사 휴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10일(9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의 사망 :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7. 기타 경조사로 인정된 휴가 : 1일 <p>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p>	<p>복무규정 제4장 휴일 및 휴가</p> <p>제36조(경조사 휴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결혼 : 5일(휴일 제외) 2. 배우자의 출산 : 20일(120일 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제외, 3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의 사망 :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7. 기타 경조사로 인정된 휴가 : 1일 <p>② 제1항 3호에서부터 7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p>

제위원회 규정 제 3 장 인사위원회	제위원회 규정 제 3 장 인사위원회
<p>제10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변호사 등 외부인사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 시설의 장 2. 위 원 : 운영위원회 임원 및 팀장급 이상으로 시설장이 위촉한 자 2인 이상 3. 간 사 :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4. 임시위원 : 심의의결할 사항과 관련한 직종 책임자 1명 	<p>제10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변호사, <u>노무사</u> 등 외부인사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 시설의 장 2. 위 원 : 운영위원회 임원과 팀장급 이상에서 시설장이 위촉한 자 2인 이상 3. 간 사 :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4. 임시위원 : 심의의결할 사항과 관련한 직종 책임자 1명

위원장(김희자대표이사) : 설명을 듣고 추가 질문 사항을 묻다.

박순옥 이사 : 의견을 듣고 이의 없음을 표하다.

김선희 이사 : 박순옥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권 현 이사 : 김선희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대한 의견을 묻다.

전 체 이사 : 전원 찬성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3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규정’(안)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4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침(인사관리)’ 보고(안)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4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침(인사관리)’ 보고(안)을 원장에게 설명을 들겠습니다.

김명숙원장 : 제44조(징계절차) → 시말서는 인사관리지침 제42조의 견책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이며, 종사자의 인사관리에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설장 단독의 처분보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봅니다.

제47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제54조(의결통보), 제55조(징계의 집행)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삭제합니다.

제56조(징계의 효력) → 집행 시기를 시설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7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 제44조 제2항 및 제3항과 조문 중복되며, 재심 의결도 초심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삭제

운영지침 (인사관리)

2026.1.27

변경 전	변경 후
<p>제41조(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p> <p>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책: 전과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기간 중 봉급이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p>제44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의 장이 행한다. 단, 정도가 경미하여 훈계가 필요한 사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시설장이 직접 견책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p> <p>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4.)</p> <p>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p> <p>제47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설의 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p>	<p>제41조(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p> <p>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9.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책: 전과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징계처분기간 중 봉급이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제44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의 장이 행한다.</p> <p>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4.)</p> <p>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p> <p>제47조 삭제(2026.01.27.)</p>

제54조(의결통보)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 집행) ① 시설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집행일로부터 발생한다.

제57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 65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이 규정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54조(의결통보)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 집행) ① 시설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징계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집행일로부터 발생한다.(단,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2026.01.27.)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설명을 듣고 추가 질문 사항을 묻다.

이선희 이사 : 의견을 듣고 이의 없음을 표하다.

김선희 이사 : 이선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권 현 이사 : 김선희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대한 의견을 묻다.

전 체 이사 : 전원 찬성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제4호 의안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침(인사관리)’ (안)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5호 의안 **법인수녀회 인사이동에 따른 종사자 임면의 건**

성 명	이임일	부임일
박영미 수녀	2026년 2월 28일	
심복순 수녀		2026년 3월 1일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법인사무국 인사이동에 따른 임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다.

박순옥 이사 : 의견을 듣고 이의 없음을 표하다.

김선희 이사 : 박순옥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서경선 이사 : 김선희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대한 의견을 묻다.

전 체 이사 : 전원 찬성하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법인사무국임면의 건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기타토의

의장 (김희자 대표이사) :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부의안건 외에 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 일동 : 없습니다.

이선희 이사 :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권 현 이사 : 재청합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폐회하기로 동의·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사 일동 : 이의 없습니다.

의장(김희자대표이사) : 그럼 이것으로 2026년도 제1차 이사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사회의를 마치니 12시입니다).

2026. 2. 20.

광주광역시 북구 엠코로 123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사회복지원 (도장보관중이신분)

대표이사	김 희 자	
이 사	이 선희	
이 사	서 경 선	

이 사	박 순 옥	
이 사	김 선 희	
이 사	신 창 수	
이 사	권 현	권 현
감 사	이 향 수	
감 사	신 춘 희	
이 사	김 진 숙	

